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6. 26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 7. 1

다. 상정일자 : 제12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및 2003. 5. 13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중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지방 자치법,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